
Policy and Law Report _Vol.19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6.12.~6.18.) -

June 19,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6/12~6/18)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디지털 분야 정책자금 1.31조원 공급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총괄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서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상품 집중공급을 발표함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디지털 분야 정책자금 후보기업을 선발하며, 6/26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구성 : 금융위원회(의장),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핵심분야별 정책금융 지원규모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핵심 분야</th><th>지원규모</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디지털 신산업</td><td>인공지능</td><td rowspan="4"> 대출 및 보증 6,950억원 * 산업은행 2,000억원, 기업은행 2,200억원, 신용보증기금 2,750억원 ** 신용보증기금 750억원은 글로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유니콘 육성 사업을 통해 별도 선발 </td></tr> <tr> <td>데이터</td></tr> <tr> <td>클라우드</td></tr> <tr> <td>소프트웨어</td></tr> <tr> <td colspan="2">인공지능 반도체</td><td> 대출 및 보증 5,300억원 *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200억원, 신용보증기금 1,100억원 </td></tr> <tr> <td colspan="2">디지털 미디어·콘텐츠</td><td> 대출 및 보증 660억원 * 기업은행 510억원, 신용보증기금 150억원 </td></tr> <tr> <td colspan="2">양자</td><td>보증 200억원(신용보증기금)</td></tr> <tr> <td colspan="2">합계</td><td>1조 3,110억원</td></tr> </tbody> </table>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	핵심 분야		지원규모	디지털 신산업	인공지능	대출 및 보증 6,950억원 * 산업은행 2,000억원, 기업은행 2,200억원, 신용보증기금 2,750억원 ** 신용보증기금 750억원은 글로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유니콘 육성 사업을 통해 별도 선발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대출 및 보증 5,300억원 *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200억원, 신용보증기금 1,100억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대출 및 보증 660억원 * 기업은행 510억원, 신용보증기금 150억원	양자		보증 200억원(신용보증기금)	합계		1조 3,110억원	2023-06-15
핵심 분야		지원규모																					
디지털 신산업	인공지능	대출 및 보증 6,950억원 * 산업은행 2,000억원, 기업은행 2,200억원, 신용보증기금 2,750억원 ** 신용보증기금 750억원은 글로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유니콘 육성 사업을 통해 별도 선발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대출 및 보증 5,300억원 *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200억원, 신용보증기금 1,100억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대출 및 보증 660억원 * 기업은행 510억원, 신용보증기금 150억원																					
양자		보증 200억원(신용보증기금)																					
합계		1조 3,110억원																					

부처	내용	일시
	② 데이터 :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좌우하고 일상생활·경제활동 영위 및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원동력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③ 클라우드 :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 AI를 위한 고성능 연산능력 등 클라우드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구축 → SaaS*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SaaS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 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공) ④ 소프트웨어(SW) :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정책금융 공급 ⑤ 인공지능(AI)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정책자금 공급 ⑥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 공급 ⑦ 양자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핵심산업 선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산업통상 자원부	•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현지시간 6월 13일 (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함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번 이행법 초안은 금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음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으며,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음 이에 따라 금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되었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3.6.13.~7.11.)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임	2023-06-14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3.10.1.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 라인을 준비할 계획임 이행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고항목)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 * 감면대상 탄소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은 미발표 ② (보고절차)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 수입업자가 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제3자 검증서는 불필요) *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필요 - (예) '23년 4분기 배출량은 '24년 1월말까지 보고 ③ (배출량 산정) EU-ETS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계산 후 사업장의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 ① 활동량×배출계수(예: 석탄소비량×석탄 배출계수), ② 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 등 제품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배출량 산정 - '24.12.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25.1.1부터는 EU 방식만 인정)	
금융 감독원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음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선정하여 사전 예고함 2024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신용위험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 채무자 상황 등 기초하여 신용위험 평가 - 기대신용손실 관련 주석공시 * 기간별 손실충당금 잔액, 변동내역 등 ※ (업종) 호 업종(건설업, 조선업 제외) 장기공사수익 -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 산출법·투입법 적용, 일관성 있는 측정 - 계약 관련 주석공시 * 계약자산·손실충당금 등 ※ (업종) 건설업, 조선업 전환사채(CB) 콜옵션 - 콜옵션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 *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 소급적용(원칙) - 콜옵션 관련사항 주석공시 * 발행조건, 평가손익, 거래(양도)손익 ※ (업종) 호 업종 우발부채 공시 - 계약 및 소송 관련 의무사항 검토 * 자원 유출가능성 및 금액 추정 - 종류별 세부내역 주석공시 * 추정 금액, 불확실성의 정도, 변제가능성 ※ (업종) 호 업종	2023-06-1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2024.6.14. 시행 예정. 다만, 제2조제2호 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 예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 마련 (제2조) ②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③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④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⑤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운영 의무를 부여함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 (제22조) ⑦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23조 및 제24조) ⑧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⑩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은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제43조)	2023-06-1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⑪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45조)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2024.6.14.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음성·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3조의2 신설)	2023 06-1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6.14. 시행 예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5조제5항, 제7조제5항, 제11조, 제20조의2 신설 등)	2023- 06-1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12.14. 시행 예정)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4조의2 신설, 제10조제1항 등)	2023- 06-1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안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②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80조제1항제2호제8항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6/15(목)~7/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	2023-06-15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3.14.~4.3.) 내용 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 (안 제4조) – 출자금 총액의 요건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 –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시의 경우 '6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2023-06-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6/12(월)~7/2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	
보건 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와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 이에 따라, 요양비 등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위반사실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13조의3) -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 ② 위반사실 공표대상 및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③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제1항, 별표4)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한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하여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6/15(목)~7/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	2023-06-15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등의 위임 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3-06-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급여증의 발급·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안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② 의료급여증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기준 변경 (안 제14조제1호 및 제2호) -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 ③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규정 삭제 (안 제15조) -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되찾은 경우 및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 등은 의료급여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 ④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규정 (안 제23조의2) -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관련 서식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⑤ 장애인 보조기기 기금 부담금액 변경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사목, 제2호 및 제3호 가목, 별지 제14호의5) - 장애인보조기기 품질 강화,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보조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기금 부담금액 변경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⑥ 요양비 압류방지 계좌 지급 신청 관련 서식 반영 (안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2호의6, 제12호의7) -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방법을 요양비 지급청구 제출서류에 반영 ※ 의견 제시기간 : 2023/6/15(목)~7/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 (안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	2023-06-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 (안 제21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 추가 ③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2조) -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 삭제 ④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2023/6/13(화)~7/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 (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 의견 제시기간 : 2023/6/16(금)~6/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로 제출	2023-06-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3-06-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물성 식품 대상 규정 (안 제1조의2 신설) - 잔류물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규정 - 식육 비중 등 축산물의 특성, 위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외국 대부분이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품목부터 우선 시행 ②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업무 명확화 (안 제13조의3, 제14조) - 수출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기반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의견 제시기간 : 2023/6/14(수)~7/2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및 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신고 수리 대상 및 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 -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신고수리(자동적 처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 및 절차 마련 필요 ②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7]) -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및 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등록을 허용 중이나, 신고대행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6/14(수)~7/2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	2023-06-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신설 (안 제10~제11조, 개정 별지 서식 제9호 신설)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 (현행 별지서식 제1호, 제4호, 제9~10호 개정) -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 (현행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③ 일반지주회사의 CVC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반영 등 -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소유사실 기산점 명확화 (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별지서식 제11조 개정) - 기타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정 및 별지서식 신설 등에 따른 고시 조문 및 별지 서식 일괄 정비 ※ 의견 제시기간 : 2023/6/14(수)~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로 제출	2023-06-1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 (안 제22조) -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	2023-06-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4) -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하여 차수별(1~3차) 부과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을 구분함 ③ 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 (안 제27조) -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④ 기타사항 정비 (안 제12조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고 규정 정비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6/15(목)~7/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로 제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조문번호 정비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 (안 제12조의2) -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 체결일,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6/15(목)~7/2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로 제출	2023-06-15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나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통상의 물건과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제공계약에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 (안 제733조의3 신설) - 제공자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함 -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또는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함 -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동안,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②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담보책임 (안 제733조의4 신설) -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 청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디지털제품의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등부터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민법」상 계약에 관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 제공된 디지털제품의 변경 (안 제733조의5 신설) -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을 침해받은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023-06-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④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안 제733조의6 신설) -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이용자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사업이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과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에 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2023-06-16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3-06-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 (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에 의해, 착오송금 및 미반환액이 크게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20,444명의 착오송금액 312억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6,018명에게 73억원을 찾아주기도 하였음. 특히, 올해 1월부터 반환지원 대상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착오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금액기준으로는 78.2%가 급증한 상황임 이와 같이 착오송금액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예보의 반환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이고 착오송금액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려 반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실제 사례로, 2021년 은행 고객이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를 실행하여 즉시 거래은행에 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함 이에 해당 고객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수취인이 폭언 등을 일삼으며 끝끝내 반환하지 않아, 예보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야 착오송금액을 1년 4개월만에 입금받을 수 있었음 이에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려고 할 때, 이를 받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송금이 이뤄지는 이른바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23-06-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가 상호 확인을 거쳐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거래와 관련한 범죄나 소송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음. 특히, 수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제3자 입금’ 수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이에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음.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호가목)	2023-06-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3호)	2023-06-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2023-06-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2023-06-15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침해사고의 대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2023-06-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기존에 이루어진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2023-06-1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2023-06-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23인)」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에 지닌 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 70조제3항 및 제6항)	2023-06-15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등)	2023-06-14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2023-06-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 등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 과정에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2023-06-1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06-1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신설)	2023-06-13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7호)	2023-06-1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출·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20억원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출·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023-06-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 까지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함 (안 제15조제2호 및 제7호) ② 정부는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신설) ③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20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도록 하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은 20억원 이하에서 25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023-06-1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며,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3-06-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포상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2항) ③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 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2023-06-16
보건복지위원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2023-06-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환경노동 위원회	•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u>」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함. 이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보편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여되는 의무인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건으로 설정함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준용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산지가 모두 벌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지 벌목 상태를 이유로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산지 훼손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하는바, 14년 넘게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안 제25조제1항제7호)	2023-06-12
	• 「<u>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u>」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평균기온 상승수준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90% 이상이 각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투자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움. 이에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3-06-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상할당을 배출권 할당의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무상할당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 탄소가격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②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에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배출권거래를 업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업자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③ 배출권 매매 또는 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업자의 등록요건과 준수의무 등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함 (안 제22조의3 신설) ④ 배출권거래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함 (안 제22조의4 신설)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6/19(월) 11:0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6/20(화) 10:0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힘)	
	6/21(수) 14:0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안건 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6/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4호 특집호 발간 -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6/21(수)	금주의 서평 제633호 발간 - 에너지 세계사 (저자:브라이언 블랙)	
	6/22(목)	「현안, 외국에선?」 제61호 발간 - 중국의 新국가전략 :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예산정책처	6/20(화)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간	
	6/20(화) 14:00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분석 및 산출 방법 연구	의정관 417호
입법조사처	6/20(화)	「이슈와 논점」 발간 -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21(수)	「이슈와 논점」 발간 -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	

[별첨1] 제407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6/19(월) 14:00	법안심사제2소위	- 고유법 심사
	6/20(화) 14:00	전체회의	- 간사·소위원장 개선 및 소위원 보임 - 고유법 상정 및 의결 - 타위법 심사
정무위	6/20(화) 11: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6/22(목) 14: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6/20(화) 11:00	전체회의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6/20(화) 전체회의 산회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6/23(금) 14: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과방위	6/21(수) 10: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 법안 심사
	6/22(목) 10: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 우주청 입법 공청회
행안위	6/22(목) 10:00	전체회의	- 간사 선임의 건 - 법안 상정 -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
문체위	6/22(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6/20(화) 14:30	전체회의	- 간사·소위원장 선임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질의
	6/22(목) 10: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6/21(수) 10:00	청원소위	- 청원 심사
	6/22(목)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정치개혁특위	6/20(화) 본회의 산회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개선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보고
	6/22(목) 14: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기후위기특위	6/19(월) 14:00	전체회의	-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9(월) 09:30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백혜련·김민철·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6/19(월) 10:00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 안」 토론회	유기홍·홍익표· 조경태·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9(월) 10:00	제3회 UCAI 포럼 세미나 - 금융 범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AI 협력 세미나	김성원 의원실, 한국경영정보학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9(월) 10:00	지하철 제연기능 현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녹색신문사	의원회관 세미나실
6/19(월) 14:00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6/19(월) 14:00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 : 5천 2백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9(월) 15:00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0(화) 14:00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	민형배 의원실, 포용과 혁신	의원회관 6간담회실
6/21(수) 09:30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안철수·김종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1(수) 13:00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1(수) 14:00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	박대수·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2(목) 07:30	제2회 2023 의원외교 세미나 - 한일관계 대전환의 전략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회관 3간담회실
6/22(목) 09:30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2(목) 10:00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2(목) 14:00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 핵심 원료 수급, 물류 혁신,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김희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12(월)	「팩트북」 제102호 발간 - K-콘텐츠	
	6/14(수)	금주의 서평 제632호 발간 - 인섹타겟돈 (저자: 올리버 밀먼)	
	6/15(목)	「현안, 외국에선?」 제60호 발간 - 디지털랜드 핀란드: 정부개혁과 디지털 나침반 계획	
예산정책처	6/16(금)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보고서 발간	
	6/16(금)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	6/12(월)	「이슈와논점」 제2100호 발간 -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	
	6/13(화)	「이슈와논점」 제2101호 발간 -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6/13(화)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37호 발간 -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2(월) 10:00	<u>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u>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2(월) 13:30	<u>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상 기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u>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3(화) 10:00	<u>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u>	이정문 의원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3(화) 10:00	<u>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u> -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3(화) 10:00	<u>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u>	강훈식 의원실, 국회유니 콘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13(화) 13:30	<u>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u>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3(화) 14:00	<u>2023년 OSP Korea-GIFT 포럼</u> -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시스템의 고도화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5(목) 14:00	<u>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u> -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5(목) 14:00	<u>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u>	홍문표 의원실, 한국농공학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

5. 지난주 (6/12~6/18)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6/12(월)	중국	생성식 인공지능, 가치를 담은 중국식 생성AI
6/15(목)	조세	해외가상자산계좌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6/15(목)	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6/16(금)	ESG	공정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